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2025. 7. 11.(금) 배포 즉시

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

-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, 입법예고(1.23.)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
-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
-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,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

고용노동부는 7.11.(금)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**“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(체감온도 33도 이상)” 등을 포함**한 **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**했다고 밝혔다.

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,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**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**으로 **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**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.

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,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,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.

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**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, 다음 주 중에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**을 **공포·시행**할 예정이며,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
❶ **현장에서 반드시 준수**해야 할 **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」**에 대해 **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**하여 **사업장에 적극 홍보**

* ❶시원한 물, ❷냉방장치, ❸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❹보냉장구 지급, ❺119신고

❷ **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·점검**

❸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**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**(본예산 200억원, 추경 150억원)하고,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

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"**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,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**이다."라고 강조하면서,

"**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,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.**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신욱균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사무관 주무관	나상명 (044-202-8893) 박현건 (044-202-8891) 한진우 (044-202-889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